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고·신청·제출자가 기관장인 경우 권익위에 신고·신청·제출〉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39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신고·신청·제출자가 기관장인 경우 권익위에 신고· 신청·제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현회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11. 29.
3. 회 부 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들에 관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삭제, 제2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신고·신청·제출자가 기관장인 경우 권익위에 신고· 신청·제출

□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공공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의 장인 경우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하도록 하고, 권익위는 이에 대해 시정요구, 조사기관 이첩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생략) ② <u>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u> <u>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u> <u>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u> <u>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u> <u>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u> <u>하여야 한다.</u> <u><신설></u>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25조의2(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관련 신고·신청·제출) ① <u>이 법에 따라 신고·신청·제</u> <u>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u> <u>관장(국회, 법원, 헌법재판소</u> <u>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장</u>

현행	개정안
	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은 이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신청·제출시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계획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신청·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현행	개정안
	<u>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u> <u>⑥ 제5항에 따른 이첩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치는 제19조를 준용한다.</u>

□ 현행법은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5조),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5조1)).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에 관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곤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권익위에 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을 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경우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관장은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제출을 제3의 기관에 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기관장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해 인사평가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기관장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관장의 신고·신청 처리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함.

□ 다만, 많은 공공기관장의 신고·신청·제출 접수 및 처리 업무를 권익위가 담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의 규율 대상인 공공기관은 제2조제1호2)에서 정하는 바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

와 같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국립·공립학교 등인데, 이 중 헌법기관을 제외하더라도 약 1만 7천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 관한 신고·신청·제출 업무를 권익위가 모두 담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³⁾

- 또한, 개정안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공기관장이 자신에게 취할 현행법 제7조⁴⁾에 따른 조치에 대해 그 계획을 제출받고, 해당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권익위의 의사결정 절차⁵⁾를 감안할 때 시정요구 기한인 14일이

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3) 2025년 2월 기준 권익위 이해충돌방지팀은 총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5) 권익위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5조)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 그리고, 권익위가 공공기관장에 대한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해당 직무의 특성,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등이 필요한데, 기관장이 제출하는 조치 계획 외에 실효성 있는 판단자료를 권익위가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추가적으로, 개정안 제25조의2제3항 및 제4항은 해당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장이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공공기관장의 기관 내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권익위에 부여되는 조치 권한의 범위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25조의2제3항이 정하는 공공기관장 조치 계획에 대한 시정요구는 현행법에 없는 제도로써 개정안만으로는 그 시정요구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시정요구 유형 및 정도를 다른 기관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⁶⁾

6) 안 제25조의2제2항은 현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등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 등에 대한 시정을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 종합하면, 공공기관장의 신고·신청·제출은 권익위에 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기관장의 직무수행 상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나,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신중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체계 자구와 관련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개정안은 현행법 제25조제2항을 삭제하면서 제25조의2를 신설하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에 대해서는 신설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장이 신고·신청·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현행법을 적용하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것으로 보임.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신청·제출의 주체인 기관장이 권익위 위원장인 경우에도 권익위에 신고·신청·제출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 제25조의2제2항 및 제4항은 각각 법 제7조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의무 및 시정요구 이행의무를 공공기관장에게 새롭게 부여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반 시 제재수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법의 벌칙(제27조)이나 과태료(제28조) 부과 대상에 이를 추가할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은 규율 대상이 되는 자를 “소속기관장”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조제7호7)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 공직자의 소속 여부와 관계 없는 개정안 제25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합해 보임.

- 권익위는 개정안에 대해, 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에 대한 보다 공정한 처리를 위해 신고·신청·제출을 제3의 기관에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이 과도하게 지연될 우려를 방지하고, 권익위가 기관장의 신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고·신청·제출을 조사·확인하는 등의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건이 마련되거나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07
